

2024년 도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제1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4. 3. 26.(화), 14:00 ~ 17: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

▣ 안 건 : 총 4건

- 심의 3건(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서릉 1호분 봉분복원 등)
- 보고 1건(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개정(안))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서릉 1호분 봉분복원

2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 완충영역 설계

3 「북한산성 행궁지(사적)」 정비공사(8차)

【보고사항】

4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개정(안)

[심의사항]

안건번호 (복원 2024-1차-001)

1.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서릉 1호분 봉분복원

가. 제안사항

-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사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서릉 1호분 봉분 복원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 시행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릉 1호분에 대한 봉분복원공사를 시행하고자 마련한 설계(안)에 대하여 수리기술위원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함안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 지정면적 : 797,282.m²
 - 지 정 일 : 2011. 7. 2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서릉 1호분 봉분복원공사
 - 사업금액 : 269백만원
 - 사업지침
 -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서말이산 1호분에 대한 봉분정비를 실시한다.
 - 사업내용
 - 1호분 봉분복원 : 장축 18.0m, 단축 16.0m, 높이 34.3m
 - 임시진입로 개설 : 폭 3.0m, 길이 226.1m
 - 봉분 잔디쌓기 등 잔디공사

○ 발굴조사 이력

연도	조사내용	비고
2013	정밀지표조사 43기 봉토분 확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함안 남문외고분군·傳안라왕궁지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14 ~ 2015	남문외고분군 11호분 정밀발굴조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함안 남문외고분군 11호분』
2019. 04	남문외고분군 6·7호분 시·발굴조사	삼강문화재연구원 (2019.04) 『함안 남문외고분군 사적승격을 위한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2019. 09	함안 남문외고분군 산4번지 일원 시·발굴조사	경남연구원 (2019.09) 『함안 남문외고분군 산4번지 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2023. 11	함안 말이산고분군(서구릉) 1호분 및 1구역 시·발굴조사	삼강문화재연구원 (2023.11) 『함안 말이산고분군(서구릉) 1호분 및 1구역 시·발굴조사보고서』
2023	함안 말이산고분군(서구릉) 탐방로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삼강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 정비 이력

연도	정비이력	요약
2020	남문외고분군 6,7호분 봉분복원공사	서릉 6, 7호분 봉분 복원
2020	말이산고분군 HM57호, HM128호분 정비공사	5-1, 5-2호분 봉분 복원
2020	함안 말이산고분군 45호분 정비공사	45호분 봉분 복원
2021	함안 말이산고분군 탐방로 정비사업	탐방로 정비 및 개설
2021	함안 말이산고분군 13호분 정비공사	13호분 봉분 복원
2022	함안 말이산고분군 봉분정비공사(72, 74호분)	72, 74호분 봉분 정비 (복토 및 잔디식재)
2022	함안 말이산고분군 75호분 봉분복원공사	75호분 봉분 복원
2023	함안 말이산고분군 봉분정비공사(5, 61, 63호분)	61, 63호분 봉분 정비 (복토 및 잔디식재) 및 5호분 보수

라. 관계전문가 의견(설계자문)

< 2024. 1. 26.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 >

(1호분 봉토 복원)

- 발굴보고자((재)삼강문화재연구원)는 1호분을 감싸듯 분포하고 있는 17~18기의 수혈을 봉토 외연(가장자리)의 ‘단절형 주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수혈 내에서 1호분 조성기~직후(6세기1/4~2/4)의 대호, 호, 옹 등 저장용 토기편들이 다량 출토됨으로써 이 수혈들을 1호분 축조 당시 및 이후 제의가 이루어진 주구시설로 본 것으로, 적절한 해석임.
- 따라서 1호분 봉토는 주구(수혈)의 위치를 근거로 설정하되, 매장주체부 성격(지상식 석곽묘)과 규모(묘광길이 4.7m, 너비 1.9m), 매장분인 1-2, 1-3호 석곽묘와의 위치 관계 등과 말이산고분군의 기존 발굴성과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봉토 평면형과 규모 : 매장주체부의 중심에서 거리 8~9m의 지점을 연결한 원 즉 단축(남북) 16m, 장축(동서) 18m의 약한 타원형분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기의 장단축은 설계도면(안, p.13) 방향을 기준으로 함)

- * 단, 보고자는 봉토를 지름 24m의 긴 타원형임을 제시하였으나(발굴보고서 p.216), 이는 봉토규모가 지나치게 커 외연의 수혈(주구)을 모두 덮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봉토의 평면형과 관련해서는 말이산고분군의 봉토분이 대부분 원형분이나 동구릉 21호분이 좁아지는 특수한 지형적 상황으로 인한 타원형분인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지형적 특성의 서구릉 1호분 역시 타원형분인 것으로 판단됨.

- 봉토 높이 : 지름 16~18m의 약한 타원형분임을 고려하여 고분군의 기발굴, 복원정비된 완만한 경사의 봉토를 기준으로 산출할 것(매장주체부 바닥면에서 약 2.5~2.8m)

- 봉토의 성토 : 물성이 다른 흙을 두께 10cm 내외로 교호 성토 및 다짐하여 안정화할 것

(임시진입로 개설)

- 가급적 발굴유구 상부를 회피하도록 설계하고, 임시진입로 구간은 전체적으로 복토하여 지반을 보호할 것. 만약 발굴유구의 상부를 지나는 경우, 80cm 이상의 복토를 통해 유구 훼손을 방지할 것
- 1호분 주변의 남서쪽 급경사 구간(NO.10~NO.13+6.1)은 복토 시 토재가 잘 점착될 수 있도록 마사토와 점질토를 적절히 배합하여 시공하도록 할 것
- 토사 이동용 차량의 동선 및 회차 구간을 표기하여 시공 시 유구와 지형이 추가 훼손, 변경되지 않도록 할 것

< 2024. 1월,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 >

- 임시진입로 성토재료 및 다짐기준을 설계서에 명시
- 고분 평면적 반경, 높이는 고고학 전문가 및 발굴자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되, 성토재료 및 다짐은 설계서에 명시

마. 점토의견(수리기술과)

- 고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따라 봉분의 규모를 설정하고 발굴조사시 작성된

토층도를 검토하여 판측다짐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봉분 내측으로 역구배를 두어 안정성을 높인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봉분의 잔디 평떼 식재 상세도에서 1단의 높이(잔디+흙)가 5cm로 잔디가 활착할 있는 흙 두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사를 위한 임시진입로는 지하유구를 보호하고 향후 관람로를 조성하기 위해 복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고분의 토질(갈색토, 황갈색토 등)은 금회공사 계획인 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및 말이산 고분군의 발굴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정하도록 함
 - 임시진입로는 유구 위치를 최대한 피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유구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계획하도록 함
 - 수립 중인 종합정비계획의 탐방로 및 배수체계와 연계하여 금회 공사를 계획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2.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 완충영역 설계

가. 제안사항

- 사적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완충영역 설치공사 설계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완충영역 설치공사' 사업을 수리기술위원회 검토를 받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상북도 고령군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
 - 소 재 지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산13번지
 - 지정면적 : 23,802m²
 - 지 정 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완충영역 설치공사
 - 공사예정금액 : 금500,000천원(예상)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완충영역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 사업내용 : 고아리 벽화 고분 완충영역 설계
 - 석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전실, 판석 또는 탄화목 마감, 창호설치, 주변정비 등
 - 보수정비 이력
 - 1964년 : 1차 보수(봉분정비)
 - 1976~1977년 : 2차 보수, 진입로 정비공사(봉토 제거 후 높이 조성, 방수처리, 연도 출입문 설치)
 - 1984년 : 발굴조사, 3차 보수 및 실측조사
 - 1991년 : 4차 보수(벽화 보존처리, 내부 살충·살균 훈증소독, 출입문 보수)
 - 2001년 : 구조안전진단
 - 2015년 : 1, 2차 긴급보강

- 2017년 : 폐쇄조치 및 보존방안 계획수립 학술용역
- 2017년 : 미생물저감처리, 기밀성 단열출입문 설치, 주변정비
- 2018년 : 벽화고분 내부 티타늄구조보강(일부구간) 및 계측기 설치, 중점관리 모니터링
- 2019년 : 고분 내부 자동화 계측기 유지관리, 구조 안정성 검토 용역
- 2020~2022년 : 임시보강재철거, 티타늄보강재 조정 및 설치, 고분 내 보존처리 등
- 2020년 :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 2023년 : 방재 IOT시스템 구축, 완충영역 설계, 보존처리계획 수립 중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3. 12. 6.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위원, ○○○, ○○○ 전문위원, 영남대학교 ○○○ 교수 >

- 고아리 벽화 고분에 설치될 완충영역은 현재 계획된 것보다 설치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한다.
 - 현재의 출입문에서부터 출입문 양측에 설치된 화강석(마름돌)석축이 꺾이는 곳 또는 거친돌 계단이 있는 곳까지를 완충영역의 공간으로 추가 검토한다.
 - 완충영역의 출입문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닥부를 일부 제거하거나, 출입문 양측의 석축상부에 화강석(마름돌)을 몇 단 추가하는 정도의 높이로 고려한다.
- 완충영역과 연도에 계획된 향온·향습기의 설치는 기 설치사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차라리 완충영역 내에 출입문을 추가 설치하여 여러 공간으로 나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 바람, 습기 등이 직접적으로 고분에 유입되지 않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최소한으로 설치하여 가급적 외부의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내부 온·습도 등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 벽화고분의 보존환경조성을 위해 출입구 주변에 기 설치된 완충영역의 설치 사례를 추가 조사한다.

< '24. 1. 23.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 전문위원, 영남대학교 ○○○ 교수 >

- 고아리 벽화 고분의 완충구역은 1안과 2안을 절충한 계획(안)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 완충구역이 좁은 관계로 규모를 마름돌 석축 바깥쪽으로 확장하여 설계하되 기존 마름돌 석축은 존치하고, 진입부의 거친돌 계단은 동측방향으로 이동

설치한다.

- 출입구 측면에 있는 기존의 마름돌 석축 위로 추가 신설되는 마름돌 석축 뒷채움 판축구간은 기존 다짐보다 상대적으로 더 밀실하게 다짐을 실시하여 우기시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고, 마름돌 석축 배면구간에도 상부 장대 석구간과 같이 방수와 방습, 단열처리를 실시한다.
-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변 봉분에 대한 토성(물성)시험 및 상대다짐도 (현장밀도, 실내다짐시험 등) 시험을 실시하여 최대한 유사한 토사를 반입 하고, 철저한 다짐관리를 실시한다.
- 출입구 측면의 석재표면에 오염된 부분은 세척한다.

< '24. 1. 23.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위원 >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완충영역의 설치공사 설계용역에 1차 자문의견을 토대로 보완된 설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합니다.
 - 고아리 벽화 고분의 완충구역 설치로 인해 봉분의 경사 등 현 상태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 출입구 측면의 석재표면에 오염된 부분은 세척(건식 및 습식)하여 마감한다.
 - 완충구역이 좁은 관계로 규모를 마름돌 석축 바깥쪽으로 확장하여 설계 하되 기존 마름돌 석축은 존치하고, 진입부의 거친돌 계단은 동측방향으로 이동 설치한다.

< '23. 12. 6.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위원, ○○○, ○○○ 전문위원, 영남대학교 ○○○ 교수 >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완충영역 설치공사 설계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합니다.
 - 「완충 영역 하부 평면도」 완충 영역 공간 중 영역 3과 영역 4는 작업 및 대기공간이 협소하므로 공간을 나누지 말고 한 공간으로 검토 요함
 - 「완충 영역 정면도와 측면도」 완충영역 설치 시 출입구 상부, 좌, 우 주변으로 복토구간이 발생되므로 복토 전에 경계면 사이에 필터층(자갈 등)을 뒤 우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완충 영역 종단면도」 도면과 같이 완충영역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남측 구간에 있는 기존석축(매우 근접)을 재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됨. 실제 석축의 높이가 약 4m이상임을 감안해 재축되는 석축은 완충영역 구조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 「완충 영역 횡단면도」 도면 내용을 보면 완충영역 설치로 인해 마치 지하 굴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음. 현지의 원지반 위치를 도면에 표시바람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본 설계안은 가야시대 유일한 벽화고분으로 알려져 있는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자 결로 및 미생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완충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임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내부의 일조 영향으로 인한 온도차이 및 외기의 유입 등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현재 설치된 진입로 및 장대석 벽체를 제거 후 봉토를 덮어 봉분을 정상화하고, 관리용 출입시설은 지하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봉분의 형태를 계획하기에는 고분의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본 설계안은 현재 시설을 유지하면서 완충 영역을 세 공간으로 구성하되 규모와 형태가 과하지 않도록 절제하여 계획하였음
- 기존 사례 결과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고, 본 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완충영역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여러 차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본 계획대로 설치 후, 기밀성 유지 등 고분 내부 환경의 보존 상태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 시 보완해나가는 방안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기 유입, 진동, 하중 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 계획을 세워 고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방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보류
-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복원정비분과)와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합동분과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
- 유사사례에 대한 보강조사(효과 등)
- 온습도 계측자료 반영
- 습기가 차는 원인규명자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보류 7명

3. 북한산성 행궁지(사적) 정비공사(8차)

가. 제안사항

-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공사(8차)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공사는 금회 설계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북한산성 행궁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종합정비계획(안)의 반영 및 향후 유지관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기도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 행궁지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일원

○ 지 정 일 : 2007.06.08.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공사(8차)

○ 공사금액 : 11,575,825천원

○ 사업지침 :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북한산성 발굴조사지 정비공사(8차) 설계를 실시한다.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69.7m), 집수지 설치(1개소) 등
- 건물지 정비(마사토 다짐, 잔디식재, 석축쌓기 등)
- 외곽 담장 쌓기(354m), 내부 담장 쌓기(132m)
- 항공기 이동(94회)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3.10.12. ○○○ 문화재수리기술위원, ○○○ 문화재수리기술전문위원 >

○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8차) 실시설계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담장시설

- 외곽담장을 전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기와지붕을 설치토록함.
- 내곽담장도 전체적으로 복원하고 기와지붕을 설치토록 함.
- 고증 사진을 참고하여 복원토록 함.

○ 배수로

- 행궁 좌측(남동측) 배수로는 내전 담장 전까지 설치토록 함.
- 내부 배수로는 기 발굴조사 시 확인된 배수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배수를 위하여 배수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 하도록 배수체계를 정비토록 함.

○ 건물지

- 내전지 외전지는 기단 초석을 노출 정비토록하고 구들시설을 복토하여 보호 토록 함. 상부는 잔디 식재토록 함.
- 동 1·2 건물지는 기단을 노출 정비하도록 함.

○ 발굴조사

- 외전지 좌측(동남측)과 외대문지 전면 진입부는 발굴조사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함.

○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 '23.12.04. ○○○ 문화재수리기술위원, ○○○ 문화재수리기술전문위원>

○ 건물지

- 건물지 정비는 기단 1단 정도를 설치하여 정비하도록 함.(종합정비계획 2019년 자료 참조)
- 건물지 초석이 없는 부분은 유구의 규모 및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신재로 초석을 설치하도록 함.

○ 담장

- 내담은 한식기와지붕으로 계획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2019년도 종합정비계획안 중 1안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종합정비계획에서 담장 기와까지 전체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설계계획도 이에 따름. 정비의 일관성 및 시공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담장만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담장 외부로 더 넓은 범위의 배수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초석 배치 간격 및 기단 단수 계획 등에 대한 근거 확보, 건물지 정비시 신재·채집·원 위치 부재 표시, 담장 복원 시 단면부 마감 등 도면 전반적으로 미완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일반적인 건축의 시공순서 및 원형보존 원칙에 따라 담장은 전체 복원보다는 현황을 참고하여 최소 높이로 정비하되,
 - 외곽 담장 외부의 토사측구는 우수로 인한 유실을 방지하고 토사측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리계산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보고사항]

안전번호 (복원 2024-1차-004)

4.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개정(안)

가. 제안사항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개정(안)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2024년 신설·개정이 조사·검토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방서 및 품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 주요 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수리기술평가장)

(2) 신청내용

○ 시방서 개정

- 수정 : 10공종 22항목(일반공통5, 가설3, 기초1, 기단1, 목3, 지붕1, 미장1, 석5, 성곽1, 보존처리 1)
- 용어 순화, 해체분류기준 정비, 석조문화유산 수리현장 조사결과 반영 등

○ 품셈 개정

- 신설 : 품셈 2공종 9항목(기단7, 수장2)
- 수정 : 품셈 1공종 1항목(미장1)
- 삭제 : 품셈 1공종 1항목(미장1)
- 기단공정 신설, 장마루 해체·설치 품 신설, 벽체 해체품 세분화

(3) 신청인 의견

-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순화하고 그림자료를 보완하여 이해도 향상시킴.
- 국가유산 수리현장 실상을 반영하여 시방서·품셈과 시공실무와의 간극 최소화함.

라. 기타사항

(1) '24년 시방서 개선 계획

- 드잡이공법 시공 연구용역('23년) 결과를 바탕으로 드잡이 시방서 마련

(2) '24년 표준품셈 개선 계획

- 표준품셈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품셈의 운영) 정비 절차 및 관리지침 등 관리적 측면 발전 방안 마련
 - (특수성 반영) 문화재수리 특수성 반영 방안 등 정비 방향에 대한 발전 방안 마련
 - (신뢰도 향상) 데이터수집 방법론에 대한 발전 방안
- 현장실사를 통한 품셈 데이터 수집(4공종 4항목)

구분	공종	항목	조사방법	비고
신설	석공사	여장 해체	실사	
	지붕공사	마루기와 동선 감기	실사	
모니터링	목공사	목부재조립 (신축/수리 구분)	실사	부재 재사용 활성화
	온돌공사	온돌 해체 (부토, 구들, 고래 등 구분)	실사	

바.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접수 7명

<별첨 1>

I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세부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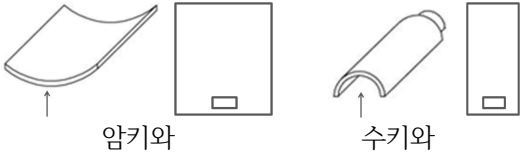
1. 어려운 용어 정비

구분	당초	개정
0100 일반공통사항		
수정	0110 문화재수리원칙 ㄱ~ㄷ. (생략)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혼 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u>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u> 한다. ㅁ~ㅅ. (생략)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ㄷ. (생략)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혼 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u>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u> 한 다. ㅁ~ㅅ. (생략)
	0120 공통사항 12.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u>수속</u> 을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0120 공통사항 12. 절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u>절차</u> 를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0130 현장관리 4. 인접 문화재 및 유구의 보호 ㄱ. (생략) ㄴ. 시공자는 문화재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 기 등 지반을 <u>절토</u> 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 사구간 내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u>유구</u> 확인 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0130 현장관리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생략)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 파기 등 지반을 <u>절토(흙깎기)</u> 해서는 아니된 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 한 <u>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u> 확인을 위 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0200 가설공사		
수정	0210 일반사항 2. 쓰임말정리 ㄱ~ㄹ. (생략)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 목재치목, 창호제 작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ㅂ. (생략)	0210 일반사항 2. 쓰임말정리 ㄱ~ㄹ. (생략)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 목재가공, 창호제 작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ㅂ. (생략)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3 우장막 설치 ㄱ. 수리용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 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수가 되 지 않는 재료로 만든 <u>우장막</u> 을 설치한다. ㄴ. <u>우장막</u> 은 처마 밑(600mm 이상)으로 내려오 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u>우장막</u> 설치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 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3 비막이 설치 ㄱ. 수리용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 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수가 되 지 않는 재료로 만든 <u>비막이</u> 를 설치한다. ㄴ. <u>비막이</u> 는 처마 밑(600mm 이상)으로 내려오 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u>비막이</u> 설치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 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3.3 목재보관소·목재치목장 ㄱ. (생략)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u>우수</u>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한다. ㄷ~ㄴ. (생략) ㅅ. 목재야적장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u>우장막</u>을 준비한다. <u>우장막</u>을 목재에 덮을 때에는 지면까지 덮지 말고 지면과 <u>우장막</u>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이 잘되도록 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u>적치</u>하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생략) 4.2. 재료적치장 ㄱ. (생략) ㄴ. 기와 및 전돌을 노상 <u>적치</u>할 때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u>우장막</u>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u>적치</u>한다. ㄴ~ㄷ. (생략)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3.3 목재보관소·목재치목장 ㄱ. (생략)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u>우수(雨水)</u>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한다. ㄷ~ㄴ. (생략) ㅅ. 목재야적장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u>비막이</u>를 준비한다. <u>비막이</u>를 목재에 덮을 때에는 지면까지 덮지 말고 지면과 <u>비막이</u>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이 잘되도록 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u>놓고</u>,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생략) 4.2. 재료적치장 ㄱ. (생략) ㄴ. 기와 및 전돌을 노상에 <u>쌓아 놓을</u> 때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u>비막이</u>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u>놓는다</u>. ㄴ~ㄷ. (생략)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2. 수리용덧집 ㄱ~ㄴ. (생략) ㄷ. 수리용덧집 내부에 <u>자재적치</u>를 할 경우에는 하중에 따른 보강조치를 한다. ㅅ~ㅈ. (생략)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2. 수리용덧집 ㄱ~ㄴ. (생략) ㄷ. 수리용덧집 내부에 <u>자재를 쌓아 놓을</u> 경우에는 하중에 따른 보강조치를 한다. ㅅ~ㅈ. (생략)
0300 기초공사		
수정	0330 시공 2.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② (생략) ③ 지정의 <u>트렌치</u> 조사, 지정의 종류, 다짐두께, 다짐방법 등 ④ (생략)	0330 시공 2.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② (생략) ③ 지정의 <u>트렌치(줄구덩이)</u> 조사, 지정의 종류, 다짐두께, 다짐방법 등 ④ (생략)
0400 기단공사		
수정	0450 시공 1. 기단설치 1.1 일반사항 ㄱ~ㄴ. (생략) ㄷ. 기단기초부가 드러난 부분은 <u>성토</u>하여 다지고, 지대석은 지면 위로 일정 부분 노출시킨다. ㄴ. (생략)	0450 시공 1. 기단설치 1.1 일반사항 ㄱ~ㄴ. (생략) ㄷ. 기단기초부가 드러난 부분은 <u>성토(흙쌓기)</u>하여 다지고, 지대석은 지면 위로 일정 부분 노출시킨다. ㄴ. (생략)

0500 목공사		
수정	0520 시공 4. 재료의 보관 ㄱ. (생략) ㄴ. 목재는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붕이 없는 경우 <u>우장막</u> 등을 덮어 눈, 비, 이물질 등이 목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ㄷ~ㄹ. (생략) ㄴ. 목재는 규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u>적치한다</u>. ㄷ~ㅅ. (생략)	0520 시공 4. 재료의 보관 ㄱ. (생략) ㄴ. 목재는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붕이 없는 경우 <u>비막이</u> 등을 덮어 눈, 비, 이물질 등이 목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ㄷ~ㅅ. (생략) ㄴ. 목재는 규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u>쌓아 놓는다</u>. ㄷ~ㅅ. (생략)
0800 미장공사		
수정	0820 재료 9. 보관 및 적재 ㄱ~ㄴ. (생략) ㄷ. 보관창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와 습기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u>우장막</u> 등을 준비한다. ㄹ~ㅁ. (생략)	0820 재료 9. 보관 및 적재 ㄱ~ㄴ. (생략) ㄷ. 보관창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와 습기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u>비막이</u> 등을 준비한다. ㄹ~ㅁ. (생략)

2.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자료 보완

0600 지붕공사		
수정	3.1.5 기와의 표시 ㄱ. (생략) ㄴ. 표시 위치 및 크기는 암키와는 아랫면 중앙에, 수키와는 그 내면에 가로 100mm 이하, 세로 50mm 이하로 하되 글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1.5 기와의 표시 ㄱ. (생략) ㄴ. 표시 위치 및 크기는 암키와는 아랫면 중앙에, 수키와는 그 내면에 가로 100mm 이하, 세로 50mm 이하로 하되 글자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암키와 수키와

3. 재료관리체계 개선(해체부재 분류 기준 및 재료조사 구체화)

구분	당초	개정
0100 일반공통사항		
수정 · 항목 조정	0140 재료관리 5. 해체재료의 보관 5.1 재사용재 및 불용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구분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재사용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ㅁ. 해체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 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ㅂ.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0140 부재 및 재료 관리 5. 해체부재의 보관 및 관리 5.1 해체부재의 분류 ㄱ. 해체부재는 가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부재(원부재, 보수보강 부재), 분리보존부재(이관보존부재, 자체보존부재), 자체활용부재(타부재 활용부재, 기타활용부재), 폐기부재로 구분하고,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분류된 해체부재는 세부분류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한다. ㄷ. 해체부재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보존부재 및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부재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부재의 관리 ㄱ. 재사용부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수·보강 후 사용하는 ‘보수보강 부재’로 구분한다. ㄴ. 재사용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보수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ㄹ~ㅂ. (삭제)

5.3 원부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재사용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강 후 사용하는 '보강부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에 따라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ㄹ. 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 ㅁ.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ㅂ. 해체 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 ㅅ.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신 설 -

5.3 분리보존부재의 관리

- ㄱ. 분리보존부재는 부재의 보존 가치가 높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하는 '이관보존부재'와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자체보존부재'로 구분한다.
- ㄴ. 분리보존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이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자체 보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ㄷ~ㅅ. (삭제)

5.4 자체활용부재의 관리

- ㄱ. 자체활용부재는 부재의 원형 특성,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는 '타부재 활용부재'와 최대한 원상태의 부재를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하는 '기타활용부재'로 구분한다.
- ㄴ. 타부재 활용부재로 활용할 경우 가공 전 원부재에 대한 부재 재원을 표시하고 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5.5 폐기부재의 관리

- ㄱ.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재사용 및 자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기 부재로 구분한다.
- ㄴ. 폐기부재로 분류될 부재 중 수리기술 향상을 위한 부재 진단, 보강 등 실험이 가능한 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연구실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ㄷ.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 각 공종 해체 재료 보관 규정: 개정내용 일괄 반영

수정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문화재수리기록 ㄱ. 문화재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문화재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생략)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생략)
0500 목공사		
수정 · 항목 조정	0530 조사 2. 해체조사 ㄱ~스. (생략) ㅇ. 부식, 충해, 변형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ㅈ. 당해 문화재의 축조시기가 불확실하거나 양식적으로 중요한 부재인 경우에는 필요시 연륜연대를 조사한다. 3. 목재수종조사 ㄱ~ㄴ. (생략) ㄷ. 조사가 끝나면 종류별로 분류하여 각각 부재명과 기본크기, 수종을 기록한 수종조사서를 작성한다. - 신 설 -	0530 조사 2. 해체조사 ㄱ~스. (생략) ㅇ~ㅈ. (삭제) 3. 목재수종조사 ㄱ~ㄴ. (생략) ㄷ. 조사가 끝나면 종류별로 분류하여 각각 부재명과 기본 크기, 세부위치, 수종을 기록한 수종조사서를 작성한다. 4. 연륜연대 조사 ㄱ. 당해 국가유산의 축조시기 및 수리이력을 밝히기 위하여 양식적·구조적으로 중요한 부재는 필요시 연륜연대를 조사한다. 5. 부재의 조사 및 진단 ㄱ. 각 부재의 상태(부식, 충해, 변형 등)를 조사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부재는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열화상태 및 강도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부재 열화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수정	0540 해체 3. 해체부재의 보관 ㄱ.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재료관리 - 5. 해체재료 - 5.3 원자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에 따른다. ㄴ. 해체하여 불용재로 분류되는 부재 중 조각, 치목 및 맞춤 기법, 단청 등의 흔적이 있는 부재는 별도로 보존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ㄷ~ㅁ. (생략)	0540 해체 3. 해체부재의 보관 ㄱ.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부재 및 재료관리 - 5. 해체부재의 보관 및 관리 - 5.1 해체부재의 분류 기준을 따른다. ㄴ. 해체하여 분리보존부재로 분류되는 부재 중 조각, 치목 및 맞춤 기법, 단청 등의 흔적이 있는 부재는 별도로 보존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ㄷ~ㅁ. (생략)

4. 석조문화유산 시공 현장 조사·반영

구분	당초	개정																																																
1300 석공사																																																		
수정 · 항목 조정	1310 일반사항 2. 쓰임말 정리 ㄱ~스. (생략) ㅇ~즈. (신설)	1310 일반사항 2. 쓰임말 정리 ㄱ~스. (생략) ㅇ. 채석 : 석산에서 공사용 석재를 채취하는 일 즈. 찰쌀기(습식쌀기) : 돌쌀기 접촉부 또는 뒤 채움에 회반죽 등을 채워 쌀기하는 것																																																
수정	1320 재료 1. 일반사항 ㄱ~ㄷ. (생략) ㄴ. 구조재료 사용하는 화강암은 압축강도가 500kg/cm ² 이상, 흡수율 3% 미만의 것을 사용한다. 2. 석재의 분류	1320 재료 1. 일반사항 ㄱ~ㄷ. (생략) ㄴ. 구조재료 사용하는 화강암은 압축강도가 49.04MPa 이상, 흡수율 3% 미만의 것을 사용한다. 2. 석재의 분류																																																
	<table><tr><th>분류</th><th>내 용</th></tr><tr><td>거친돌</td><td>• 자연적으로 암반이 갈라지고 깨어져 굴러내리거나 흩에 문혀서 풍화·마모된 돌</td></tr><tr><td>막 돌</td><td>• 야산이나 계곡 등에 산재해 있는 돌로서 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은 막생긴 돌 • 한 면이 150~300mm 정도의 네모진 막생긴 돌</td></tr><tr><td>호박돌</td><td>• 야산석이나 개울돌 등 비교적 모가지지 아니한 두리 뭉실한 돌 • 지름이 300mm 내외의 것</td></tr><tr><td>자 갈</td><td>• 암석이 풍화, 침식 등의 자연작용에 의해 작은 알 모양으로 된 것으로서 최대지름 150mm 이하인 것 - 잔자갈 15mm 이하 - 중자갈 25mm 이하 - 큰자갈 35mm 이하</td></tr><tr><td>각 석</td><td>•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미만인 것</td></tr><tr><td>장대석</td><td>•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이상인 것</td></tr><tr><td>사괴석</td><td>•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150~ 25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2배 이상인 것</td></tr><tr><td>이괴석</td><td>•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300~ 40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5~2배 이상인 것</td></tr><tr><td>판 석</td><td>• 두께가 150mm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td></tr><tr><td>박 석</td><td>• 바닥에 까는 넓고 얇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돌로서 두께는 150~250mm 내외인 것</td></tr><tr><td></td><td>-신 설-</td></tr></table>	분류	내 용	거친돌	• 자연적으로 암반이 갈라지고 깨어져 굴러내리거나 흩에 문혀서 풍화·마모된 돌	막 돌	• 야산이나 계곡 등에 산재해 있는 돌로서 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은 막생긴 돌 • 한 면이 150~300mm 정도의 네모진 막생긴 돌	호박돌	• 야산석이나 개울돌 등 비교적 모가지지 아니한 두리 뭉실한 돌 • 지름이 300mm 내외의 것	자 갈	• 암석이 풍화, 침식 등의 자연작용에 의해 작은 알 모양으로 된 것으로서 최대지름 150mm 이하인 것 - 잔자갈 15mm 이하 - 중자갈 25mm 이하 - 큰자갈 35mm 이하	각 석	•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미만인 것	장대석	•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이상인 것	사괴석	•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150~ 25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2배 이상인 것	이괴석	•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300~ 40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5~2배 이상인 것	판 석	• 두께가 150mm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박 석	• 바닥에 까는 넓고 얇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돌로서 두께는 150~250mm 내외인 것		-신 설-	<table><tr><th>분류</th><th>내 용</th></tr><tr><td>거친돌</td><td>• 자연적으로 암반이 갈라지고 깨어져 굴러내리거나 흩에 문혀서 풍화·마모된 돌</td></tr><tr><td>막 돌</td><td>• 야산이나 계곡 등에 산재해 있는 돌로서 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은 막생긴 돌 • 한 면이 150~300mm 정도의 네모진 막생긴 돌</td></tr><tr><td>호박돌</td><td>• 야산석이나 개울돌 등 비교적 모가지지 아니한 두리 뭉실한 돌 • 지름이 300mm 내외의 것</td></tr><tr><td>자 갈</td><td>• 암석이 풍화, 침식 등의 자연작용에 의해 작은 알 모양으로 된 것으로서 최대지름 150mm 이하인 것 - 잔자갈 15mm 이하 - 중자갈 25mm 이하 - 큰자갈 35mm 이하</td></tr><tr><td>각 석</td><td>•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미만인 것</td></tr><tr><td>장대석</td><td>•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이상인 것</td></tr><tr><td>사괴석</td><td>•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150~ 25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2배 이상인 것</td></tr><tr><td>이괴석</td><td>•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300~ 40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5~2배 이상인 것</td></tr><tr><td>판 석</td><td>• 두께가 150mm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td></tr><tr><td>박 석</td><td>• 바닥에 까는 넓고 얇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돌로서 두께는 150~250mm 내외인 것</td></tr><tr><td>심 석</td><td>• 면석의 일변(가로폭)대비 뒤뿌리 길이가 1.5~2배 크기인 석재</td></tr></table>	분류	내 용	거친돌	• 자연적으로 암반이 갈라지고 깨어져 굴러내리거나 흩에 문혀서 풍화·마모된 돌	막 돌	• 야산이나 계곡 등에 산재해 있는 돌로서 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은 막생긴 돌 • 한 면이 150~300mm 정도의 네모진 막생긴 돌	호박돌	• 야산석이나 개울돌 등 비교적 모가지지 아니한 두리 뭉실한 돌 • 지름이 300mm 내외의 것	자 갈	• 암석이 풍화, 침식 등의 자연작용에 의해 작은 알 모양으로 된 것으로서 최대지름 150mm 이하인 것 - 잔자갈 15mm 이하 - 중자갈 25mm 이하 - 큰자갈 35mm 이하	각 석	•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미만인 것	장대석	•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이상인 것	사괴석	•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150~ 25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2배 이상인 것	이괴석	•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300~ 40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5~2배 이상인 것	판 석	• 두께가 150mm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박 석	• 바닥에 까는 넓고 얇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돌로서 두께는 150~250mm 내외인 것	심 석	• 면석의 일변(가로폭)대비 뒤뿌리 길이가 1.5~2배 크기인 석재
분류	내 용																																																	
거친돌	• 자연적으로 암반이 갈라지고 깨어져 굴러내리거나 흩에 문혀서 풍화·마모된 돌																																																	
막 돌	• 야산이나 계곡 등에 산재해 있는 돌로서 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은 막생긴 돌 • 한 면이 150~300mm 정도의 네모진 막생긴 돌																																																	
호박돌	• 야산석이나 개울돌 등 비교적 모가지지 아니한 두리 뭉실한 돌 • 지름이 300mm 내외의 것																																																	
자 갈	• 암석이 풍화, 침식 등의 자연작용에 의해 작은 알 모양으로 된 것으로서 최대지름 150mm 이하인 것 - 잔자갈 15mm 이하 - 중자갈 25mm 이하 - 큰자갈 35mm 이하																																																	
각 석	•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미만인 것																																																	
장대석	•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이상인 것																																																	
사괴석	•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150~ 25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2배 이상인 것																																																	
이괴석	•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300~ 40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5~2배 이상인 것																																																	
판 석	• 두께가 150mm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박 석	• 바닥에 까는 넓고 얇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돌로서 두께는 150~250mm 내외인 것																																																	
	-신 설-																																																	
분류	내 용																																																	
거친돌	• 자연적으로 암반이 갈라지고 깨어져 굴러내리거나 흩에 문혀서 풍화·마모된 돌																																																	
막 돌	• 야산이나 계곡 등에 산재해 있는 돌로서 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은 막생긴 돌 • 한 면이 150~300mm 정도의 네모진 막생긴 돌																																																	
호박돌	• 야산석이나 개울돌 등 비교적 모가지지 아니한 두리 뭉실한 돌 • 지름이 300mm 내외의 것																																																	
자 갈	• 암석이 풍화, 침식 등의 자연작용에 의해 작은 알 모양으로 된 것으로서 최대지름 150mm 이하인 것 - 잔자갈 15mm 이하 - 중자갈 25mm 이하 - 큰자갈 35mm 이하																																																	
각 석	•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미만인 것																																																	
장대석	•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이상인 것																																																	
사괴석	•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150~ 25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2배 이상인 것																																																	
이괴석	•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300~ 400mm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5~2배 이상인 것																																																	
판 석	• 두께가 150mm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박 석	• 바닥에 까는 넓고 얇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돌로서 두께는 150~250mm 내외인 것																																																	
심 석	• 면석의 일변(가로폭)대비 뒤뿌리 길이가 1.5~2배 크기인 석재																																																	
수정	1330 조사 1. 사전조사 ㄱ. 사전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기울기, 부식도, 균열, 박리여부 등 ③ (생략)	1330 조사 1. 사전조사 ㄱ. 사전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기울기, 부식, 풍화, 균열, 박리, 절단, 탈락 등의 현황 ③ (생략)																																																

수정	1350 치석 2. 채석(돌가르기) ㄱ~ㄴ. (생략) 3. 가공 3.1 흑두기 ㄱ~ㄴ. (생략) ㄷ. 석재의 중간면은 쇠메, 평날메 등을 써서 거친 면으로 가공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u>정</u>으로 쪼아 깨뜨리되, 정자국이 남지 않게 한다.	1350 치석 2. <u>할</u>석(돌가르기) ㄱ~ㄴ. (생략) 3. 가공 3.1 흑두기 ㄱ~ㄴ. (생략) ㄷ. 석재의 중간면은 쇠메, 평날메 등을 써서 거친 면으로 가공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u>정</u>으로 쪼아 정리한다.
수정	1360 시공 1. 일반사항 ㄱ~ㄴ. (생략) ㄷ. 뒤채움은 크고 작은 돌을 서로 물려 쌓는다. ①~② (<u>신설</u>) 4. 박석깔기 ㄱ~ㄴ. (생략) ㅅ~ㅇ. (<u>신설</u>)	1360 시공 1. 일반사항 ㄱ~ㄴ. (생략) ㄷ. 뒤채움은 크고 작은 돌을 서로 물려 쌓는다. ① <u>면</u>석의 뒤흔리와 견고히 물려 밀실하게 매 단을 동시에 쌓아 올린다. ② <u>잔존구역</u>과 구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4. 박석깔기 ㄱ~ㄴ. (생략) ㅅ. 박석의 줄눈은 처마 낙수지점을 피하여 설치하며,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구배를 주어 설치한다. ㅇ. 박석의 바닥면은 충분한 마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인위적으로 평평하게 가공하지 않는다.
1500 성곽공사		
수정	1520 석성 2. 재료 ㄱ~ㄴ. (생략) ㄴ. (<u>신설</u>) 3. 조사 3.1 사전조사 ㄱ. 사전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⑥ (생략) ⑦ (<u>신설</u>) 5. 시공 5.1 일반사항 ㄱ~ㄴ. (생략) ㅅ. (<u>신설</u>)	1520 석성 2. 재료 ㄱ~ㄴ. (생략) ㄴ. <u>성돌을 채집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안전장비를 사용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u> 3. 조사 3.1 사전조사 ㄱ. 사전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⑥ (생략) ⑦ <u>성곽의 주변지형 및 지장물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재료 등의 안전한 진입 경로를 확보한다.</u> 5. 시공 5.1 일반사항 ㄱ~ㄴ. (생략) ㅅ. <u>성곽 쌓기에 앞서 원형보존 및 시공정밀도, 안전성 등의 검토를 위한 시범쌓기(시축쌓기)를 한다.</u>

2100 보존처리공사		
수정	2130 석조물보존처리 2. 보존처리 2.3 보존처리 2.3.2 처리법 ㄱ~ㄴ. (생략) ㄷ. 석재의 접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⑤ (생략) ⑥ (신설)	2130 석조물보존처리 2. 보존처리 2.3 보존처리 2.3.2 처리법 ㄱ~ㄴ. (생략) ㄷ. 석재의 접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⑤ (생략) ⑥ 기존 석재의 재사용을 위해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속재 등을 사용하여 보강할 수 있다.

II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세부개정내용

1. 신설

제4장 기반공사

- 신설 4-0 적용기준**
1. 생석회피우기(소화)는 생석회 100kg당 보통인부 0.13인을 가산한다.
 2. 비계매기는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세벌대 이상)
 3. 소규모 공사
 - 기반공사 수량이 3m³ 이하일 경우에는 인력품을 50% 가산한다. 단, 제1장 적용기준의 소단위공사와 둘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4. 편수산정기준
 - 기반설치 3m³당 1인
 - 기반해체 5m³당 1인
 - 채움석쌓기·해체 9m³당 1인
 5. 수량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단위	산출식	비고
기단해체	m ³	체적	
기단설치	m ³	체적	
채움석쌓기·해체	m ³	체적	-
생석회다짐(기단)해체	m ³	체적	다짐 면적 × 두께
생석회다짐(기단)설치	m ³	체적	다짐 면적 × 두께

신설

4-1 거친돌기단해체

(m³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석	공	인력품의 3%	인	1.08	
한	식	석	공 조		인	0.43	
보	통	인	부		인	0.22	
공	구	손	료		식	1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거친돌기단을 해체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해체조사, 부재번호매기기, 기단석해체, 정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뒤채움석의 해체는 ‘11-3 채움석해체’ 품을 따른다.

⑤ 기단 상면 생석회다짐 바닥 해체는 ‘4-7 생석회다짐(기단)해체’ 품을 따른다.

신설

4-2 거친돌기단설치

(m³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석	공	인력품의 5%	인	2.79	
한	식	석	공 조		인	1.11	
보	통	인	부		인	0.56	
공	구	손	료		식	1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거친돌기단을 설치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기준설설치, 바닥다지기, 기단석쌓기, 정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본 품에는 기단석쌓기를 위한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뒤채움석의 설치는 ‘11-16 채움석쌓기’ 품을 따른다.

⑥ 기단 상면 바닥 마감은 ‘4-8 생석회다짐(기단)설치’, ‘6-5 전돌깔기’ 등의 품을 따른다.

⑦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신설

4-3 장대석기단해체

(m³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석	공	인력품의 3%	인	0.93	
한	식	석	공 조		인	0.38	
보	통	인	부		인	0.19	
공	구	손	료		식	1	

[주]

① 본 품은 인력 및 체인블록으로 장대석기단을 해체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해체조사, 부재번호매기기, 기단석해체, 정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뒤채움석의 해체는 ‘11-3 채움석해체’ 품을 따른다.

⑤ 기단 상면 생석회다짐 바닥 해체는 ‘4-7 생석회다짐(기단)해체’ 품을 따른다.

신설

4-4 장대석기단설치

(m³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석	공	인력품의 5%	인	1.56	
한	식	석	공 조		인	0.63	
보	통	인	부		인	0.32	
공	구	손	료		식	1	

[주]

① 본 품은 인력 및 체인블록으로 장대석기단을 설치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규준틀설치, 바닥다지기, 기단석설치, 정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뒤채움석의 설치는 ‘11-16 채움석쌓기’ 품을 따른다.

⑤ 기단 상면 바닥 마감은 ‘4-8 생석회다짐(기단)설치’, ‘6-5 전돌깔기’ 등의 품을 따른다.

⑥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신설

4-5 가구식기단해체

(m³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석	공	인력품의 3%	인	1.03	
한	식	석	공 조		인	0.41	
보	통	인	부		인	0.21	
공	구	손	료		식	1	

[주]

① 본 품은 인력 및 체인블록으로 가구식기단을 해체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해체조사, 부재번호매기기, 기단석해체, 정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뒤채움석의 해체는 ‘11-3 채움석해체’ 품을 따른다.

⑤ 기단 상면 생석회다짐 바닥 해체는 ‘4-7 생석회다짐(기단)해체’ 품을 따른다.

신설

4-6 가구식기단설치

(m³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석	공	인력품의 5%	인	1.67	
한	식	석	공 조		인	0.67	
보	통	인	부		인	0.33	
공	구	손	료		식	1	

[주]

① 본 품은 인력 및 체인블록으로 가구식기단을 설치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규준틀설치, 바닥다지기, 기단석설치, 정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뒤채움석의 설치는 ‘11-16 채움석쌓기’ 품을 따른다.

⑤ 기단 상면 바닥 마감은 ‘4-8 생석회다짐(기단)설치’, ‘6-5 전돌깔기’ 등의 품을 따른다.

⑥ 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조 정	4-7 생석회다짐(기단)해체						(m³당)	공종 조정 「3. 기초공사」 ↓ 「4. 기단공사」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보 공	통 구	인 손	부 료	인력품의 2%	인 식			0.80 1	
	[주] ① 본 품은 생석회, 마사토 혼합물 해체 후 운반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조 정	4-8 생석회다짐(기단)설치						(m³당)	공종 조정 「3. 기초공사」 ↓ 「4. 기단공사」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생 마 보 공	석 사	회 토	부 료	인력품의 2%	kg m³ 인 식			220 1.10 1.30 1	
	통 구	인 손								
[주] ① 본 품은 기단바닥의 면고르기품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품에는 비빔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생석회피우기(소화)는 생석회 100kg당 보통인부 0.13을 가산한다. ⑤ 마사토는 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장 수장공사

신 설	10-1-2 장마루해체					(㎡당)	위계 조정 10-1 마루해체 ↓ 10-1-1 우물마루 해체 10-1-2 장마루 해체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목	공	인	0.04		
한	식	목	공	인	0.02		
보	통	인	부	인	0.01		
공	구	손	료	식	1		
인력품의 5%							
[주] ① 본 품은 장마루의 마룟널, 장선, 멍에, 귀틀해체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마룟널을 재사용하기 위해 녹슨 못의 제거 작업을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못 10개당 한식목공 0.03인을 가산한다.							
신 설	10-5-2 장마루설치					(㎡당)	위계 조정 10-5 마루설치 ↓ 10-1-1 우물마루 설치 10-5-2 장마루 설치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목	공	인	0.12		
한	식	목	공	인	0.07		
보	통	인	부	인	0.05		
공	구	손	료	식	1		
인력품의 5%							
[주] ① 본 품은 장마루의 귀틀, 멍에, 장선, 마룟널설치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마룟널 간 이음은 맞댄이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외 이음기법은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2. 수정 및 삭제

구분	당 초	개 정	비 고																																																																												
제7장 미장공사																																																																															
수정	7-1 벽체해체	7-1 벽체해체																																																																													
	(한면㎡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한 식 미 장 공</td><td></td><td>인</td><td>0.04</td><td></td></tr><tr><td>한 식 미 장 공 조 공</td><td></td><td>인</td><td>0.02</td><td></td></tr><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2</td><td></td></tr><tr><td>공 구 손 료</td><td>인력품의 3%</td><td>식</td><td>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정벌, 재벌, 초벌바르기 및 외위기해체와 해체재정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비계매기는 필요 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④ 보양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2-7 보양”에 따른다. ⑤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미 장 공		인	0.04		한 식 미 장 공 조 공		인	0.02		보 통 인 부		인	0.02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한면㎡당, 외위기-㎡당)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rowspan="3">규격</th><th rowspan="3">단위</th><th colspan="4">수량</th><th rowspan="3">전체 해체</th><th rowspan="3">비고</th></tr><tr><th colspan="4">단계별 해체</th></tr><tr><th>정벌</th><th>재벌</th><th>초벌</th><th>외위기</th></tr><tr><td>한 식 미 장 공</td><td></td><td>인</td><td>0.03</td><td>0.02</td><td>0.03</td><td>0.02</td><td>0.04</td><td></td></tr><tr><td>한식미장공조공</td><td></td><td>인</td><td>0.01</td><td>0.01</td><td>0.01</td><td>0.01</td><td>0.02</td><td></td></tr><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1</td><td>0.01</td><td>0.01</td><td>0.01</td><td>0.02</td><td></td></tr><tr><td>공 구 손 료</td><td>인력품의 3%</td><td>식</td><td>1</td><td>1</td><td>1</td><td>1</td><td>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인력으로 벽체를 한 커씩 해체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름단계별 벽체해체, 정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벽체 구조 확인을 위한 부분해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1회 면적 0.24㎡(800mm×300mm)마다 한식미장공 0.11인을 가산한다. ④ 초벌바름과 재벌바름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해체하는 경우, 재벌바름 해체품을 생략하고 초벌바름 품을 적용한다. ⑤ 바름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해체하는 경우 ‘전체해체’ 품을 적용한다. ⑥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⑦ 비계매기는 필요 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⑧ 보양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2-7 보양”에 따른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전체 해체	비고	단계별 해체				정벌	재벌	초벌	외위기	한 식 미 장 공		인	0.03	0.02	0.03	0.02	0.04		한식미장공조공		인	0.01	0.01	0.01	0.01	0.02		보 통 인 부		인	0.01	0.01	0.01	0.01	0.02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1	1	1	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미 장 공		인	0.04																																																																												
한 식 미 장 공 조 공		인	0.02																																																																												
보 통 인 부		인	0.02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전체 해체	비고																																																																							
			단계별 해체																																																																												
			정벌	재벌	초벌	외위기																																																																									
한 식 미 장 공		인	0.03	0.02	0.03	0.02	0.04																																																																								
한식미장공조공		인	0.01	0.01	0.01	0.01	0.02																																																																								
보 통 인 부		인	0.01	0.01	0.01	0.01	0.02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1	1	1	1																																																																								
삭제	7-2 회벽긋어내기	삭제																																																																													
	(㎡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한 식 미 장 공</td><td></td><td>인</td><td>0.02</td><td></td></tr><tr><td>보 통 인 부</td><td></td><td>인</td><td>0.01</td><td></td></tr><tr><td>공 구 손 료</td><td>인력품의 3%</td><td>식</td><td>1</td><td></td></tr></table> [주] ① 본 품은 회벽의 정벌바름면을 긋어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③ 잡재료는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매기는 필요 시 “2-5 강관비계매기(미장·단청공사용)”에 따른다. ⑤ 보양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은 “2-7 보양”에 따른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미 장 공		인	0.02		보 통 인 부		인	0.01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한 식 미 장 공		인	0.02																																																																												
보 통 인 부		인	0.01																																																																												
공 구 손 료	인력품의 3%	식	1																																																																												

※ 품셈 개정에 따른 공종 및 항목 번호, 적용기준 등 변경사항 당연 반영